

이사회 규정

제 정 일 : 1960. 7. 7

개 정 일 : 1999. 3. 1

개 정 일 : 2012. 3. 23

개 정 일 : 2020. 8. 11

개 정 일 : 2025. 3. 26

개 정 일 : 2026. 3. 26

주식회사 신도리코

제 목 : 이 사 회 규 정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 적)
- 제 2조 (적용범위)
- 제 3조 (권 한)

제 2 장 구 성

- 제 4조 (구 성)
- 제 5조 (의 장)
- 제 6조 (감사의 출석 등)

제 3 장 회 의

- 제 7조 (종 류)
- 제 8조 (소집권자)
- 제 9조 (소집절차)
- 제10조 (결의방법)
- 제11조 (부의사항)
- 제12조 (위 임)
-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 제14조 (사후승인)
- 제15조 (의 사 록)
-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사회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신도리코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권 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장 구 성

제 4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전원(독립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조 (의 장)

1.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2.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삭 제 2012. 3. 23)

제 3장 회 의

제 7조 (종 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그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조 (소집권자)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 각 이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소집절차)

1.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1.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의사항)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기타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한다.
2.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사항

- ① 주주총회의 소집
- ①-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②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 ③ 정관의 변경
- ④ 자본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⑤ 회사의 해산·합병·분할합병·회사의 계속
- ⑥ 회사의 영업전부 또한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⑦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⑧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⑨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 ⑩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 ⑪ 주식배당 결정
- ⑫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 ⑬ 이사의 보수
- ⑭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⑮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등에 관한사항

- ①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기
-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③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 ④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⑥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⑦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등에 관한 사항

- ① 사채발행
- ② 준비금의 자본전입
- ③ 신주의 발행
- ④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⑤ 전환사채의 발행

- 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⑦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수립 및 승인

4) 기타

- ①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③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 ④ 준법 통제 기준 제정
- ⑤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제11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감사위원회
-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위 임)

- 1.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상무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이사회내의 기구로써 상무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상무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④ 회사의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⑤ 회사의 조직 구성 및 개폐
 - ⑥ 직원의 모집 및 훈련의 기본 방침
 - ⑦ 부문업무 집행임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⑧ 급여, 근무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회사의 영업 및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
 - 2) 자산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① 주요 투자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 ②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③ 회사의 예산·결산
- ④ 자금 계획 및 예산의 운영
- ⑤ 자금의 차입
- ⑥ 다액의 기부에 관한 사항(1건당 1천만원 이상)

3) 기타 일상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승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의 사 록)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3.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7. 1)

이 규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2. 28)

이 규정은 198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3)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11)

이 규정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26)

이 규정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개정내역

회 수	개정 일자	개 정 사 유	개정 주요골자
(제 정)	1960.7.7	(회 사 설 립)	
1차	1970.7.1	상 호 변 경	신도교역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신도리코로 변경
2차	1986.2.28	회장제도 도입 및 상법개정	1.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됨. 2.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 및 의사록에 기명 날인권 인정
3차	1999.3.1	법령개정 추세에 대응하고 공개기업으로서 이사회 규정 정비	1. 이사회 부의안건의 구체화 2. 이사회 의원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위원조직의 정비 근거 마련
4차	2012.3.23	상법 개정(2012.4.15)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추가/삭제	1.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리 2. 이사회 부의안건 구체화
5차	2020.8.11	외감법개정(2018. 3. 20)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추가	1. 의장의 직무 대행 대상 추가 2. 이사회 부의사항 관련 보완
6차	2025.3.26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 및 법령 개정등에 따른 이사회 규정 정비	1. 의장의 선임 방법 및 직무 대행 순서 개선 2. 이사회 결의방법 및 부의사항 관련 조문 보완
7차	2026.3.26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자기주식 처분의 방법 구체화	1.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를 ‘독립이사’ 로 명칭을 변경 2.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보유 처분 목적 등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